

양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고 발생 및 유발행위자 처분기준

제정 2020. 5. 28 지침 제1호

□ 공용차량 운전직원 처분기준 및 신분상 처분

구 분	처분기준		신분상 처분	처분절차	비 고
	과실률	지급보험금			
횡수 무관	50% 이하	-	없음	관리부서 처분	▶ 안전교육 2시간 실시 ▶ 자차부담금 전액 부담 ▶ 포상대상 제외 ▶ 공무국외여행 추천 배제
최근 2년 이내	1회	50% 초과	100만원 이하		
			100만원 초과	주의	위와 같음
	2회	50%초과	회당 100만원 초과	경고	▶ 운전적성 정밀검사 ▶ 안전교육 2시간 실시(매회) ▶ 자차부담금 전액 부담 ▶ 포상 대상 제외 ▶ 공무국외여행 추천 배제 ▶ 보험료 인상분 구상권 청구 (기간제근로자에 한한다)
	3회 이상	50% 초과	회당 100만원 초과	징계 (인사 위원회 의결)	▶ 운전적성 정밀검사 ▶ 안전교육 2시간 실시(매회) ▶ 자차부담금 전액 부담 ▶ 포상 대상 제외 ▶ 공무국외여행 추천 배제 ▶ 보험료 인상분 구상권 청구 (기간제근로자에 한한다)
12대 중과실사고, 음주운전, 교통사고후 도주, 무면허운전 등			▶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“별표 8의2”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적용		

註) 과실률 :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사고유형 및 사고 상황에 따라 책정하는 과실비율(50% 초과 경우 가해자) 기준 적용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